

4. 장애학생지원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‘특수교육법’이라 한다)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장애학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
2. 장애학생 시험 시 필요에 따라 별도 시험장소 마련 및 대독, 대필 지원
3. 장애학생도우미 지원
4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
5. 장애학생이 10인 이상일 경우 제4조, 5조의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둔다.

제4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

- ①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장애학생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교학처장, 중앙도서관장, 기획실장, 교학부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장애학생지원센터)

- ①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‘지원센터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1.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
 2. 장애학생 교육활동의 편의 제공
 3. 교직원·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
 4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④ 지원센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특수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